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상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시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86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상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시	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1일 김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폭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폭염·폭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상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의 기상여건과 특정 수치 이상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요건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1항제7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39조(보건조치)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기상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기상현상인 폭염·한파·황사 등의 기상여건과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며,¹⁾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호).²⁾

1)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최근 폭염·한파 특보 및 대기오염경보 발령일수가 증가하면서³⁾ 온열·한랭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⁴⁾, 미세먼지로 인한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할 구체적인 건강장해 발생원인을 “고온·저온”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폭염, 혹한 등 기상현상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무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용광로, 가열로, 냉장고, 냉동고 등 인위적으로 온도를 조절한 장소에서의 작업조치에 관한 내용이고,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 자연적 기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휴식제공(제566조), 휴게시설의 설치(제567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3)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폭염특보 발령일수는 2020년 148일, 2021년 135일, 2022년 193일, 2023년 176일이고, 한파특보 발령일수는 2020년 61일, 2021년 124일, 2022년 149일, 2023년 130일로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4)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승인한 사망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2명이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고용부, 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023년 11월 19일)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8.12-2023.3) 산업현장 한랭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임

**[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폭염·한파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 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열장갑과 방열복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제6장(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한랭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폭염·한파·황사 등의 기상현상과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함으로써 기상 및 대기 환경 요인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다만,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애의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된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보건조치 의무를 실질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는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개정 주체인 정부의 실행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현행법상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할 구체적인 건강장애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분진”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시키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을 “분진작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등⁵⁾ 현행법으로도 개정안의 취지가 구

5)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1. ~ 25. (생략)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

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장해 발생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인용조문 등의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사업주에게 폭염·한파·황사, 미세먼지에 따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 보건조치도 규정하고 있어, 입법실익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안이 “장시간” “옥외작업”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한정하여, 건강장해의 발생 원인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법령보다 보호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장소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